

#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13
----------	--------

제안일자 : 2019. 9. 3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1. 수정이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법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인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안 제2조),
- 시장이 내실있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해 주체간의 협력방안 제시, 장기방치 건축물의 우선순위와 정비방향 제시,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한 정비방안 도출 등 고려해야할 원칙을 규정하고(안 제4조),
-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 결정을 위한 정비방법을 세분하여 제시함(안 제5조).
- 시장이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여건 등

고려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6조),

- 시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할 때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시장이 원활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 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8조, 안 제9조),
- 필요한 경우 시장이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설치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를 안 제3조로 하며, 안 제3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원칙) 정비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부·지자체·이해관계자·사업시행자 등 이해 주체의 연계 협력 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장기방치 건축물의 상태, 이해관계자 현황, 서울시 재정여건과 정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와 정비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3. 건축기준의 특례, 금융기법의 적용,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최적의 정비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잉여금은 사업성이 낮은 타 정비사업에 활용 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비사업 및 정비방법의 구분) 정비사업은 법 제2조제2호를 말하며, 정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2. 철거 후 토지 비축

3. 취득 후 공사재개·신축

4. 공사비 보조·융자

5. 분쟁 조정

6. 안전 조치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방법

제6조(정비 우선순위 결정 기준)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서 제공하는 지표와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에 따른 정비 시급성과 정비에 따른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활성화 등의 파급효과
2. 정비사업의 사업성
3.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 관할 자치구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추진 의지
4. 권리관계, 채권자 수 등 정비사업의 가능성

제7조(철거명령시 필요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명령의 이행기간
3. 이의 제기 방법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를 각각 안 제8조와 안 제9조로 한다.

안 제13조를 안 제10조로 하고, 안 제10조(중전의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 건축주(토지소유주를 포함한다),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 제14조를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p> <p>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건축물등을 말한다.</p> <p>3. “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p> <p>4.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p> <p>5.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p> <p>6.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p>	<p>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p>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4.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5.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우선순위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
7.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8. 법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9. 정비사업을 위한 자원조달 계획
10. 총 정비사업비 규모



11. 그 밖에 시장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단 장치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시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전자문

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 ② (생략)

<신설>

제5조(철거명령 등) ① 시장은 공사 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제3조(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제4조(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원칙) 정비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부·지자체·이해관계자·사업시행자 등 이해 주체의 연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장기방치 건축물의 상태, 이해관계자 현황, 서울시 재정여건과 정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와 정비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3. 건축기준의 특례, 금융기법의 적용,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최적의 정비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잉여금은 사업성이 낮은 타 정비사업에 활용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사업 및 정비방법의 구분) 정비사업은 법 제2조제2호를 말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명령의 이행기간
3. 이의 제기 방법

③ 시장은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조치명령)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며, 정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2. 철거 후 토지 비축
3. 취득 후 공사재개·신축
4. 공사비 보조·융자
5. 분쟁 조정
6. 안전 조치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방법

제6조 (정비 우선순위 결정 기준)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서 제공하는 지표와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

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펜스 등의 설치 및 정비·경고문의 설치
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붕괴 및 비산 방지
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
4. 지하 흠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
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제7조(공사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영 제7조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 ①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에 따른 정비 시급성과 정비에 따른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활성화 등의 파급효과
2. 정비사업의 사업성
3.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 관할 자치구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추진의지
4. 권리관계, 채권자 수 등 정비사업의 가능성

제7조 (철거명령시 필요한 조치)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명령의 이행기간
3. 이의 제기 방법

<삭 제>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삭 제>)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정비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대행자 지정) 시장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라 위탁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제12조(자문단 구성)  
① ~ ② (생략)

제13조(자료 요청)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제9조(자문단 구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자료 요청)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토지소유주를 포함한다),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원칙) 정비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부·지자체·이해관계자·사업시행자 등 이해 주체의 연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장기방치 건축물의 상태, 이해관계자 현황, 서울시 재정여건과 정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와 정비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3. 건축기준의 특례, 금융기법의 적용,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최적의 정비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잉여금은 사업성이 낮은 타 정비사업에 활용 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사업 및 정비방법의 구분) 정비사업은 법 제2조제2호를 말하며, 정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2. 철거 후 토지 비축
3. 취득 후 공사재개·신축
4. 공사비 보조·융자
5. 분쟁 조정
6. 안전 조치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방법

제6조(정비 우선순위 결정 기준)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서 제공하는 지표와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에 따른 정비 시급성과 정비에 따른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활성화 등의 파급효과
2. 정비사업의 사업성
3.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 관할 자치구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추진 의지
4. 권리관계, 채권자 수 등 정비사업의 가능성

제7조(철거명령시 필요한 조치)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명령의 이행기간
3. 이의 제기 방법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자치구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요청)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중단 건축물 건축주(토지소유주를 포함한다),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